

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홍성룡 의원입니다.

지난 4월 1일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
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은 만일의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
호하고 지진재난에 대비하고자 내진성능확보, 지진가속도 계
측기 설치, 지진대피소 장소 지정·관리, 지진재난 훈련·교육·
홍보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,

각종 지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·관리하여 이를 시
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,

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의 지진방재사업에 ‘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·운영’을 추가하여 각종 지진방재 사업들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서울시의 지진방재력을 향상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
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